

하남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

발의자 : 금광연 의원

제출일 : 2025. 10.

1. 제안이유

행정전문가인 마을행정사를 위촉하여 행정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취약 계층에게 무료 상담, 서류 작성 지원, 행정업무 안내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목적과 정의(안 제1조~제2조)
- 나. 운영(안 제3조)
- 다. 역할(안 제4조)
- 라. 위촉 및 해촉(안 제5조~제6조)
- 마. 지원대상 및 상담방법(안 제7조~제8조)
- 바. 상담결과 관리 및 지원(안 제9조~제11조)
- 사. 포상(제12조)

3. 전문위원 검토의견 (전문위원 한종수)

- 본 조례안은 행정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행정전문가인 마을행정사를 통해 무료 상담, 서류 작성 지원, 행정업무 안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,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시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검토 결과,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제정된 것으로 판단되나, 운영 세부기준을 체계적으로 마련하여 활용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

■ 「행정사법」 [시행 2022. 11. 15.] [법률 제19034호, 2022. 11. 15., 일부개정]

제26조의3(행정사회의 공익활동 의무) 행정사회는 취약계층의 지원 등 공익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.

■ 「행정사법 시행령」 [시행 2025. 3. 12.] [대통령령 제35382호, 2025. 3. 12., 타법개정]

제2조(업무의 내용과 범위) 「행정사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정사 업무의 내용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사무: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작성하는 일
가. 진정·건의·질의·청원 및 이의신청에 관한 서류

나. 출생·혼인·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 사항에 관한 신고 등의 각종 서류

2. 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사무: 개인(법인을 포함한다. 이하 이 호에서 같다) 간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개인 간의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작성하는 일

가. 각종 계약·협약·확약 및 청구 등 거래에 관한 서류

나. 그 밖에 권리관계에 관한 각종 서류 또는 일정한 사실관계가 존재함을 증명하는 각종 서류

3. 법 제2조제1항제3호의 사무: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를 번역하는 일

4. 법 제2조제1항제4호의 사무: 다른 사람의 위임에 따라 행정사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거나 번역한 서류를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는 일

5. 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사무: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인가·허가·면허 및 승인의 신청·청구 등 행정기관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신고하는 일을 대리하는 일

6. 법 제2조제1항제6호의 사무: 행정 관계 법령 및 제도·절차 등 행정업무에 대하여 설명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일

7. 법 제2조제1항제7호의 사무: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을 조사하거나 확인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위탁한 사람에게 제출하는 일